



굴삭기에 철판이 부딪치면서 넘어짐



작업장에서 굴삭기(10ton) 이동 중 굴삭기 가위장비에 건설용 거푸집 옆에 세워두었던 철판(710kg)이 부딪쳐 넘어지면서 옆에서 청소용 빗자루를 들고 있던 피재자를 압착하여 사망



발생 원인

-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전담운전자 미지정
 - 굴삭기 작업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운전 면허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작업을 함
- 작업수행 시 유도자 미배치
 - 작업수행 시 유도자를 미배치하여 작업 반경 내 근로자 등의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음

TIP

안전작업

- 1**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전담운전자 지정
 -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를 가진 작업자를 운전자로 지정
- 2** 차량 진입로 확보 및 작업자 시야 확보
 - 작업장의 정리정돈으로 작업차량 진출입로 확보 및 장애물 제거
- 3** 작업수행 시 유도자 배치
 - 유도자를 배치하여 기계의 위험작업 및 근로자 접촉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



유도자 배치

☞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(자격·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 (전도 등의 방지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(접촉 방지)





굴삭기에 철판이 부딪치면서 넘어짐

건설기계작업 시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세요!

